사단법인 사람과인공지능 정관

제정: 2026. 06.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사람과인공지능 "(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Association (HAIA)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산업 현장 적용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지능화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301호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I 리터러시 교육 및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2. AI 기술·리터러시·AX 리더십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출판 사업
3.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 및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과제 수행
4. 맞춤형 AI 도입 전략 수립 및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자문 활동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2. 준회원: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
3. 특별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협회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 자격이 부여된 개인
4. 기업회원: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관련된 사업, 연구, 교육 또는 국제협력 업무를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탈퇴 선언
2.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3. 제8조에 따른 제명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행정,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부회장 등 임원의 구체적인 직함과 역할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방법)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해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에 의결할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3. 결산의 심의
4. 총회 부의 안건
5. 회원 가입 및 제명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조직 및 운영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제25조(의결권 제한) 다음의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에 관한 사항
2.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호>와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재원)

1.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회비
 B.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 및 출연금
 C.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D. 기타 수입금
2. 수입은 학술, 교육, 출판, 성과공유 및 확산, 문화, 예술 등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1.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과 잉여금)

1. 본 회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법인해산)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A.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B.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C.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2.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3.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본 회에 관하여 정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6. 06. 22.

발기인 대표 조성준 (인)　　발기인 김형민 (인)　　발기인 강필성 (인)

발기인 김동일 (인)　　발기인 성기석 (인)　　발기인 김미숙 (인)

발기인 강석호 (인)